

[2023. 6.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만 나이로 씁니다
만 나이로 씁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457-06



전남을 품다, 새민생을 보다
전라도전년

세계로 우뚝하는
전남도약!
전남 행복시대

2023년 12월(제374호)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I 새로운 판례

1.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신청구 승인처분 취소	7
2.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10
3. 저작권법 위반	12
4. 임대차보증금	14
5.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16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18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	26
3.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30
4.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	35
5.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9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	43

III 행정심판 재결사례

1. 레미콘제조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46
2.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및 정보공개 이행 청구	59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68
2.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69
3. 주택을 증축·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70
4.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义的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71

5.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72
6.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74
7.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75
8.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76
9.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8
10.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79

V 법무단신

1. 중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대법, '스토킹 첫 인정'	80
2.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82
3.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83
4.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내면 된다”	86
5.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수요자 오인·혼동 초래"	88
6.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90
7. 유승준, 두 번째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91
8.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92
9.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94
10.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 추징 미선고는 부당”	96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99
-------------------	----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임금의 산정-③	104
· Calculation of wages-③	106
· 工资的计算-③	108
· Tiền lương-③	110

VIII 법제처 법나들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112
---------------------------------	-----

I. 새로운 판례



1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신청구 승인처분 취소

* 대법원 2022두62284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 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1.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 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은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제1호),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제2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통틀어 ‘일시금’이라고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 제2항, 제4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다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액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3항은 일시금의 분할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이 사건 특례조항을 준용하므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일시금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공무원인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이 사건 이혼소송’) 원고의 예상퇴직급여 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이 사건 이혼소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조항(이하 ‘이 사건 포기조항’)이 포함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신청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신청구를 승인하자(‘이 사건 처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 원심은, 이 사건 조정에 이 사건 포기조항을 포함시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소송과 이 사건 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의 협의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가 협의 내지 조정을 하면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공무원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이혼배우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서는 이혼배우자가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범위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퇴직급여 전부에 대하여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 2019두53952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한편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시정제도를 마련하였다(기간제법 제8조, 제9조).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통한 사업장의 업무상황 조사, 관련자에 대한 진술이나 서류제출 요구 등과 같은 직권 조사권한이 있고, 심문기일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도 있다(기간제법 제10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이 단계를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제 판단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대상성 판단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원고 의료원의 중앙공급실 소속 일급제 계약직 보조원(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

참가인이 정규직 보조원과 비교했을 때 제수당, 기관성과급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을 구하는 사안임

- ☞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하여 중앙공급실 소속 정규직 보조원 일반, 기능직 3등급 3호봉의 정규직 보조원, 김○○와 신○○ 등을 섞어서 주장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중앙공급실 소속 정규직 보조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심리를 거친 다음, 그중 ‘중앙공급실 소속 기능직 3등급 3호봉의 정규직 보조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적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재심판정에 비교대상 근로자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3

저작권법 위반

*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354 판결 참조).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 총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

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손상시켜 피해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문제된 사안임

- ☞ 대법원은, ① 피해자가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이나 저널의 전문가 연재란에 피해자 저작물을 비롯한 다수의 글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학식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누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는 등 피해자 저작물의 게시를 중단하자 피고인이 이러한 기회에 피해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자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로 인하여, 그 저작자를 피해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4

임대차보증금

* 대법원 2023다259743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의,
- 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 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 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 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차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증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증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 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증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증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총액만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으로 기재한 사안임
- ㉔ 원심은, 피고 1이 증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개업자로서의 의무위반이나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㉔ 대법원은, 피고 1은 다가구주택의 증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1과 그 공제협회인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5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 2019두59349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중전 용역업체에서 8년 9개월간 근무했다가 원

고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된 고속도로 영업소 서무주임으로, 1세, 6세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초번 근무(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용기간(원고는 고용승계 국면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다투어 지는 사안임

- ☞ 대법원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실시하면서, 배려의무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원고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따른 사용기간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거부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제1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각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을 말하며(「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3호) 등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각주: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의미하고,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사정은 없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각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를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한 경우’가 포함되는지?(각주: 질의 가 및 나 모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보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로서,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2016. 1. 1. 이후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나.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2010년전임용공무원”이라 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각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은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이후 개정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음.)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각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제1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61세(제2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제3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제4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제5호), 2033년부터는 65세(제6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전임용공무원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각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제1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제2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제3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제4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제5호), 2033년부터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6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계급정년’이란 동일 계급에서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퇴직시키도록 정한 기한’을 의미하고, ‘~ 되어’란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른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령정년(60세)과 계급정년(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구분하여 규정(제1항)하면서,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제5항)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 계급별로 각 계급정년에 이르게 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정년퇴직 외의 다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예퇴직’은 본인 스스로의 사의(辭意) 표시와 이에 따른 임용권자의 수리 행위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각주: 법제처 2023. 4. 6. 회신 22-0973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인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급정년 도달로 인한 ‘당연퇴직’은 ‘특정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여 계급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표시나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그 직이 당연히 상실(각주: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 2036판결례 참조)되는 것인바, 명예퇴직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 등과 같이 계급정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인 경우라도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 및 퇴직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계급정년 적용대상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계급정년 도래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해당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연령에 명예퇴직하였으나 계급정년 제도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여 ‘연령정년 도래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경찰공무원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하 “지급개시시점”이라 함)이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계급정년 도래 전 명예퇴직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각주: 「공무원연금법」 제1조 참조)인 반면,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도’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한 데 대해 공로를 보상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전원 재판부 2017헌마321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으로서 양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바, 각각의 제도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불리를 이유로 법령 개정 없이 법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질의 가에서 살핀대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 계급별로 각 계급정년에 이르게 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정년퇴직 외의 다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와 동일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는 점,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은 같은 법 본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지급개시시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2010년 전 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계급정년 적용대상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했다는 이유로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연령에 명예퇴직하였으나 계급정년 제도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여 ‘연령정년 도래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경찰공무원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수당을 지

급받은 공무원과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시점(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이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므로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각주: 「공무원연금법」 제1조 참조)인 반면,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도’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공로를 보상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으로서 양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바, 각각의 제도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불리를 이유로 법령 개정 없이 법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

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 ② ~ ⑧ (생략)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績)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2.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 연장 전의 정년퇴직일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사례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질의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각주: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6년)과 중등교육(3년)에 대한 취학 의무(이하 “취학 의무”라 함)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 답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6세(각주: 5세 또는 7세 선택 가능)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먼저 "면제"란 통상적으로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유예"란 통상적으로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바, "면제"와 "유예"는 그 법적인 효과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취학 의무 면제'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를 면하여 줌으로써 그 자녀 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각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도 포함함.)에 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입학 시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취학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도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하면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

석해야 할 것인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에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취학 의무를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각각 규정하면서(법 제4조), 학교의 교과를 국어·도덕·사회·수학 등으로 정하고(영 제43조제1항), 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영 제45조제1항)이 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감독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공교육 체계 안의 학생이 받는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3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국가기관 청원경찰”이라 함)의 각종 수당의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2호) 제1호다목에서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 ‘정근수당’을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하 “정근수당”이라 함)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각주: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함.)(이하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이라 함)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의 기간(각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각주: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이 ‘근무연수’에 산입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

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2023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2호) 제1호다목에서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을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는 그 성질상 따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7. 11. 회신 18-0355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각주: 공무원수당규정 제1조 참조)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근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면서(본문),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각 목에 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국가공무원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을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정근수당이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를 예방하며 조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의 지급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그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각주: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211 결정례 참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행정기관의 장이 임용한 자로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각주: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례 참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원경찰에 대해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을 정

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의 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이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청원경찰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서는 청원주(각주: 「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함.)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규정하여(제2항), 법령상 계급을 정하지 않은 청원경찰에 대해 적용이 어려운 ‘강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의 종류를 경찰공무원(각주: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됨(「국가공무원법」 제79조 참조).)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은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이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승급기간에 준용될 때에는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준용된다(각주: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299 해석례 참조)고 보아야 하는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정직’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승급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생략)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략)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

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다. (생략)

3. ~ 5. (생략)

②·③ (생략)

사례4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질의요지

「관세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각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각주: 부분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참조.)(제1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각주: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이하 “지정공장”이라 함)에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민간항공기 무역협정”이라 함)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군용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이하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라 함)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지?



회 답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가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체계,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세법」 제89조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제품의 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부분품과 원재료의 세율은 높은 제품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서(각주: 관세법(이종익·박병목), 세경사, 2019, P.309 참조), 같은 조에서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제1항)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6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세 감면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그 물품을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규정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세율불균형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도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지정공장에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는 의미이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부분품과 원재료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분품과 원재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분품과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도 같은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75년 12월 22일 법률 제2793호로 일부개정된 구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 중 재무부고시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래로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2호로 「관세법」을 일부개정하여 중소기업이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차례의 부칙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3호로 일부개정된 「관세법」에서는 제89조제6항을 신설하여 본칙으로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동시에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율(제1호)과 그 외의 물품에 대한 감면율(제2호)을 다르게 규정하였는바, 이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자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다르게 하려는 취지(각주: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개정된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개정되었을 뿐, 제조 또는 수리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가 군용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의 감면 여부를 달리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법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 및 원재료는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민간항공기용인지 군용항공기용인지 여부에 따라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감면 여부를 달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 ⑤ (생략)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⑦·⑧ (생략)

사례5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함)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각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 참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조제2항에서는 ‘보수’ 중 같은 영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각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참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제1호에서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제2호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③ 제3호에서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 하는지?

 회 답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같은 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의정활동비(제1호), 월정수당(제2호) 및 여비(제3호)를 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영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영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 대상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달리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각주: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각 호로 열거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같은 항 제2호의 월정수당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봉급과 봉급 외의 각종 수당’을 의미(각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 본문 참조)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각주: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대응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월정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영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각주: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33조제1항으로 이동하여 규정된 후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다시 현행과 같이 제40조제1항으로 이동하여 규정되었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활동비(제1호), 여비(제2호) 및 회기 중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제3호)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호의 비용 외에는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후,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0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유능한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원들이 생계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에게 회기 중에만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월정수당’으로 개편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직 전환 후 현재까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제40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제41조),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제42조)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례 참조)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③ (생략)

사례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각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 말함.)은 이송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한 이송업자(이하 “종전 이송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 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도 승계되는지?(각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이 유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각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각주: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각주: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레미콘제조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2. 10. 청구인에게 한 레미콘 제조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7. 26. 피청구인에게 고흥군 **면 **리 산130번지(임야, 계획관리지역 / 부지면적 7,670.00㎡, 건축면적 817.32㎡(제조시설 367.70㎡, 부대시설 449.62㎡)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대에 레미콘제조업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담당 부서에서 청구인의 레미콘제조공장 신청에 따른 산지·농지전용 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도로 점용 허가, 건축허가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하였다.

피청구인은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에 청구인의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자,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10. 23.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①사업부지 내 25도 이상 지역 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 마련 등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8. ①사업부지 내 25도 이상 지역의 제척에 대해 신청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7.46도로 25도에 못 미치므로 허가사항에 적합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부지(약 1,022㎡)를 제척하였고,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인근 마을에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마을 앞에서 유턴하지 않고 신설되는 ** 회전교차로, 우산1 교차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하겠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11. 26.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 청구인이 당초 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결로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부결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10. 청구인에게

①사업부지 내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 미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마련 미반영 및 진입로 구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 상존, ③공장신설 예정지가 **마을, **마을 등 기존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레미콘제조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4.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10. 청구인에게 한 레미콘제조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1) 사업부지 내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 미제척 사유에 대하여

「고흥군 군계획 조례」제18조에서는 고흥군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구비하여야 할 요건 중 하나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토지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불승인한 것이 잘못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최근 관내에 경사도 25도 이상의 부지를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가 빈번하게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에만 경사도 25도 이상의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2) 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마련 미반영 및 진입로 구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 상존이라는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전라남도, 고흥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협의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협의기관 어디에서도 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은 없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이 생기면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으로부터 기존 농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농로 이용자들은 신설되는 폭 6m의 차량 교차가 가능한 포장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국도와의 진출입 또한 가능하여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감소하게 되었다.

결국,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근거나 지적도 없이 막연히 국도 진입부 신호체계 마련을 보완하지 않았거나 진입로 구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불승인 사유로 삼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공장신설 예정지가 **마을, **마을 등 기존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사업부지 인근의 위해발생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피청구인은 **천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나, 임시 침사지(2개소)에 대한 주기적 퇴적물 제거 및 사업부지 경계부에 방류 턱 설치 및 폐수처리시설과 오수시설 처리로 **천의 오염가능성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하수 이용 현황 조사, 잠재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환경부 주관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며, 고흥군 **면 **리 또한 1~2년 이내에 상수도를 통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지하수로 인한 생활용수의 오염가능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과 관련하여 ①사업부지 내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 미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마련 미반영 및 진입로 조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 상존, ③공장신설 예정지가 **마을, ***마을 등 기존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불승인 사유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대상이고, 청구인이 예정하고 있는 공장 신축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불승인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청구인의 공장신축 부지 중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 미제척과 관련하여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경사도”는 명백히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였는바, 「고흥군 군계획 조례」제18조에서는 고흥군 내에서 개발행

위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구비하여야 할 요건 중 하나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토지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을 정하고 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제1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은 ‘영 별표 제1의 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호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호는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제3호는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4호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이다.

이와 같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제18조제1항은 고흥군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다시 말해 위 조례 규정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지 위 규정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달리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서 「고흥군 군계획 조례」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이 위 조례 제18조를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일 뿐,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임에도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지 중 경사도 25도 이상의 일부 지역을 허가대상지에서 배제함으로써 평균 경사도가 더욱 낮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경사도 25도라는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의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마련 미반영 및 진입로 구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 상존의 사유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의 신청지는 국도 15호선과 인접한다. 현재 청구인의 신청지 진입로와 연결된 국도 15호선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인데, 이 사건 신청지는 본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 아닌 관계로 위 국도와 신청지 진입로로 연결되는 곳에는 신호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도 15호선을 타고 **마을(신청지 남서쪽) 방향에서 **마을(신청지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청구인의 신청지로 진입하는 경우나, 청구인의 신청지에서 **마을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호기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국도 제15호선과 이 사건 신청지 진입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라남도, 고흥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거나, 인근 마을에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마을 앞에서 유턴하는 곳이 없이 옥강 회전교차로, 우산 1교차로, 우산 2교차로를 신설하여 진출입하겠다는 내용의 사실상 무의미한 보완책을 제안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허가 신청지 인근에는 넓은 규모의 논밭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출입하는 통로는 위 전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으로부터 기존 농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무의미한 보완책만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으로서의 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신청지의 지리적 여건상 인근 마을에 환경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신청지 북서쪽으로 약 1,000m 거리에 ***마을이, 남동쪽으로 약 600m 거리에 ***마을이 각 존재하고 있는데,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공장 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허가 신청지는 위 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은 고흥군 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신청지의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허가 신청지가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도 인근 마을에 아무런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리에 위치하고 있는 ***천 발원지에 가깝다. 이 우산천은 ***리를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리 주민들이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의 발원지 인근인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폐수 등으로 인하여 ***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리 주민들에게 안전상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과 ***마을을 포함한 ***리 지하수 유역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지에 공장이 들어서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면, 이 지하수를 직접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마을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라) 이상과 같이 비록 이 사건 신청지가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제한 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지형의 여건 및 이 사건 신청지 일대의 특성상 청구인의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예견할 수 있는 환경피해가 결코 적지 않으며, 이와 같은 환경피해가 ***마을과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 밖에도,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다수의 ***리 주민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레미콘공장 신설을 반대하는 집회도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6)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 2) 「건축법」 제11조
- 3)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4)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의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9. 7. 26. 피청구인에게 고흥군 **면 **리 산130번지[임야, 계획관리지역/부지면적 7,670.00㎡, 건축면적 817.32㎡(제조시설 367.70㎡, 부대시설 449.62㎡)]에 레미콘제조업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하였다.
- 2) 피청구인은 담당 부서에서 청구인의 레미콘제조공장 신청에 따른 산지·농지전용 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도로 점용 허가, 건축허가 등 적합 여부를 검토하였다.
- 3) 피청구인은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에 청구인의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자,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10. 23.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①사업부지 내 25도 이상 지역 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 마련 등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 4) 청구인은 2019. 11. 18. ①사업부지 내 25도 이상 지역의 제척에 대해 신청

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7.46도로 25도에 못 미치므로 허가사항에 적합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부지(약 1,022㎡)를 제척하였고,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인근 마을에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마을 앞에서 유턴하지 않고 신설되는 ** 회전교차로, ***1 교차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하겠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 5) 이에 대해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11. 26.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 청구인이 당초 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결로 의결하였다.
- 6) 위와 같은 부결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10. 청구인에게 ①사업부지 내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 미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마련 미반영 및 진입로 조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 상존, ③공장신설 예정지가 **마을, ***마을 등 기존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레미콘제조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7) 청구인은 2020. 2. 4.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8) 2020. 7. 7.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려면 국도 15호선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해 진입하여야 하는데, 진입로는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6m 폭으로 확장할 예정이고, 신청지 앞쪽은 논으로 벼를 경작하고 있으며, 신청지에서 약 200m 정도 거리에 옛날 수달이 살았다는 저수지(**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산지)의 경사도는 약 17도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경사도인 25도보다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사업부지 인근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임시 침사지 및 방류 턱 설치, 폐수처리시설과 오수시설 설치 등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허가(건축·전기·통신)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 북서쪽으로 약 1,000m 거리에 **마을이, 남동쪽으로 약 600m 거리에 **마을이 위치하나, 신청지에서는 마을이 보이지 않으며,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은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공장 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협약의 의제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3.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변지역과 관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은 “①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②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③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3) 청구인의 레미콘제조업 공장 신설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10. 23. ①사업부지 내 25도 이상 지역 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 마련 등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9. 11. 18. ①사업부지 내 25도 이상 지역의 제척에 대해 신청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7.46도로 25도에 못 미치므로 허가사항에 적합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부지(약 1,022㎡)를 제척하였고,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인근 마을에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마을 앞에서 유턴하지 않고 신설되는 옥강 회전교차로, 우산1 교차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하겠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가 2019. 11. 26. 다시 ‘부결’로 의결하자, 부결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10. 청구인에게 ①사업부지 내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 미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마련 미반영 및 진입로 조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 상존, ③공장 신설 예정지가 **마을, ***마을 등 기존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레미콘 제조공장 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불승인 사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피청구인은 고흥군 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이른 것이나,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5) ①사업부지 내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 미제척, ②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마련 미반영 및 진입로 조성에 따른 레벨차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유에 대하여 2019. 7. 7.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려면 국도 15호선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해 진입하여야 하는데, 진입로는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6m 폭으로 확장할 예정이고, 신청지에서 약 200m 정도 위쪽에 옛날 수달이 살았다는 저수지(옥강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산지)의 경사도는 약 17도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경사도인 25도보다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요구한 일부 사업부지(약 1,022㎡)를 계획에서 제척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사업부지 인근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임시 침사지 및 방류 턱 설치, 폐수처리시설과 오수시설 설치 등 오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었으며,

청구인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허가(건축·전기·통신)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전라남도, 고흥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협의기관에서는 국도 진입부 신호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은 없었다.

또한,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농로 이용자들은 신설되는 폭 6m의 차량 교차가 가능한 포장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국도와의 진출입 또한 가능하여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불승인 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6) ③공장 신설 예정지가 **마을, **마을 등 기존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유에 대하여

2020. 7. 7.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 북서쪽으로 약 1,000m 거리에 **마을이, 남동쪽으로 약 600m 거리에 **마을이 위치하나, 신청지에서는 마을이 보이지 않으며,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은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공장 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는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사업부지 인근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한 점,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천 오염 가능성에 대해, 임시 침사지(2개소)에 대한 주기적 퇴적물 제거 및 부지 경계부에 방류 턱 설치 및 폐수처리시설과 오수시설 설치로 **천 오염 가능성 예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 점,

특히,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잠재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고흥군은 환경부 주관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며, 신청지 인근 마을 또한 1~2년 이내에 상수도를 통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의 설립허가 신청을 불승인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7)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및 정보공개 이행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20. 2. 11.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1. 사건 개요

청구 외 김○○(현 장흥군 **읍장, 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은 장흥군 **면장 재직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 보호)를 위반하여 제3자인 노○○에게 청구인의 민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30.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라남도지사(감사관, 이하 ‘도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감사 민원을 제출하였고, 도 감사관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①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하였고, ②해당 지역의 면장으로서 민원내용 등을 피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하였다고 여겨지며, ③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문책 조치하겠으며, 피청구인에게는 이번 민원을 계기로 민원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도 감사관의 답변만으로는 이 사건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상응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2020. 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해 당사자임을 명시하고 ①도 감사관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처분요구서’와 ②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무원에게 징계처리한 문서(이하 ‘징계처분서’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0. 2. 25. 청구인에게 처분요구서와 징계처분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감사, 인사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공무원을 ‘시장 점포 사용허가 정지 또는 취소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의 청문 업무 소홀 및 민원처리

법 제7조(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문책'했다는 정보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20. 2. 11.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요구서와 징계처분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상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한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무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자 이 사건 고충민원의 제기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에 대한 '알 권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당한 결과나 조사누락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 등에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이 사건 공무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일탈행위나 개인

적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내용이 아닌 점에서 사익의 침해가 없고, 모든 국민이 대상인 민원 처리에 관한 공적 업무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감사내용인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4)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특정 공무원의 징계 여부, 사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으나 민원고발에 따른 조사결과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진 경우 해당 고발인에게 피고발인의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징계 여부 등 조사 결과는 일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 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 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가)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외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 중략 - ②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들고 있으며,²⁾

나) 판·검사(검사와 판사는「검사징계법」제23조 및 「법관징계법」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1) 을제1호증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39쪽

2) 을제1호증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43~144쪽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 3) 행정안전부의 “특정 공무원의 징계 여부, 사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민원고발에 따른 조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진 경우, 해당 고발인에게 피고발인의 개인정보사항을 제외하고 징계 여부 등 조사 결과는 일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개인정보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이 경우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사건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또한 처분요구서 등의 전체 문서를 공개하라는 유권해석은 아니며 조사 결과의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1(전라남도 감사결과 답변) 및 증거 3(장흥군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결과 통보)으로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 법령

- 1) 정보공개법 제9조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 4) 「전라남도 감사 규칙」제27조, 제35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9. 4. 30.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904-667167)를 통해 도 감사관에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조사 요청’의 고충(진정)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 2) 이 사건 민원을 접수한 도 감사관은 「전라남도 감사 규칙」제35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2019. 5.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다 음 -

- 귀하의 민원은 과거 귀하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 관련 공무원이 피민원인에게 민원인 성명, 민원 내용 등을 제공하여 피민원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으니 해당 공무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이에 대해 귀하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지역의 면장으로서 민원 내용 등을 피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하였다고 여겨집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 처리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문책 조치하겠으며, 장흥군에게는 이번 민원을 계기로 민원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3) 도 감사관은 「전라남도 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 4) 청구인은 이 사건 공무원이 위법행위에 상응한 징계 조치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 2020. 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해 당사자임을 명시하고 ① 도 감사관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요구받은 문서인 ‘전라남도 감사관-9663(2019. 7. 8.)호’에 붙임된 ‘처분요구서’, ② 도 감사관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무원에게 ‘징계처리한 문서’(징계처분서), ③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도 감사관에게 제출한 ‘처리 결과 문서(장흥군 기획홍보실-1877호의 불

입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5)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0. 2. 25. 이 사건 공무원을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문책하였다는 사실만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 인사에 관한 사항)와 제6호(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6) 청구인은 2020. 2. 27.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비공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등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라남도 감사 규칙」제35조에서는 감사관실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 민원은 민원처리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살펴보면,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공공감사법 제26조와 「전라남도 감사 규칙」제27조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 감사관 또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전라남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처분요구서’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처분요구서’나 ‘징계처분서’ 자체가 공개할 경우 감사 또는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나, 특정 공무원에 대한 처분요구서나 징계처분서는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신의 판단 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이 사건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징계내용 및 결과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민원처리 조치 결과에 대한 알 권리 등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신청 하거나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무원의 징계내용과 결과를 비공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권리 구제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과를 비공개 대

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도 감사관은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민원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공익의 관점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다63558 판결 참조),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는 있겠으나(서울고등법원 2006누30531),

이미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식별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따라 특정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행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같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증축·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승인 취소의 예외

- ☞ 다음의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 실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세부업종변경사항

7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8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로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조정

-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9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범칙금의 납부

-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 ☞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10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V. 법무단신



1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대법, '스토킹 첫 인정'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313).

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31회에 걸쳐 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으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A 씨는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는데, 이렇게 반복된 행위로 다수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A 씨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A 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2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에서 이처럼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유족)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망인 A 씨의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인 C 씨 등이 A 씨가 다니던 회사이자 A 씨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원심은 이번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됐다. 특히 주로 상속된 채무가 있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사안들이 많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단체협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며 그간 하급심 판결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 판결]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사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두59349(2023년 11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B 씨에게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인정되는지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했는지(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 씨는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 A 사와 사이에 사용계약(수습 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 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

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B 씨는 시용기간 3개월 중 A 사로부터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일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 사는 시용기간(3개월)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50점 가까이 감점한 뒤, '총점 70점 미만'이라면서 B 씨에게 본채용 거부통보를 했다. B 씨는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했고, A 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의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의 헌법적 가치,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의5)에 근거해,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라 B 씨의 입장에서는 8년 9개월간 이어진 수년간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갖는 사안인 점(고용승계사안)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은 신규채용사안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B 씨에 대해 A 사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관계자]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정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내면 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즉, 더 점유하게 된 시기에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9일 A 사가 B 씨에게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2023다25760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B 씨와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12일경 B 씨는 “A 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지했다. 이후 A 사는 2021년 8월 23일 B 씨에게 갱신 요구를 통지했지만, 결국 2022년 2월 28일경 부동산을 B 씨에게 인도했다. 이후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

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사가 임대차 종료일부턴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A 사가 B 씨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5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수요자 오인·혼동 초래"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취소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의 김 업체에서도 '광천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김 제조 업체인 A사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소송(2022허5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광천김조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광천김조합은 2014년 7월 '광천김' 표장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조합원들이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상품의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정상품은 조미구이 김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미구이 김을 비롯해 김자반, 김밥김, 구운 감태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했다.

A사는 2020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광천김' 단체표장은 △정관에 규정된 조미구이 김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구 상표법상 '소속 단체원이 단체 정관에 위반해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해 오인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점이나 주요 공장이 광천읍에 소재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 가입을 허용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단체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인 조미구이 김이 아닌 유사한 김밥김에 사용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

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사는 같은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광천김조합원들이 단체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김자반, 김밥김 등에 사용해 수요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 단체원들에게만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소속 단체원들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고유한 생산방식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지리적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해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는 것은 외관상 동일, 유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단체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상표법상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을 제조하면서 정관 규정에 위반해 국내산 천일염이 아닌 맛소금(정제소금) 또는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수요자에게 그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고, 조합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은 단체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광천김조합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생산됐다고 믿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등록상표권자인 조합이 단체등록상표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원 아닌 제3자가 '광천김'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요자를 오인하게 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리적 단체표장이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소속 단체원이 아닌 자가 지리적 단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품질에 대한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합은 무단 사용을 막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6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7

유승준, 두 번째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두49509)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유 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1990년대 후반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 측 손을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총영사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8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2023다220790).

또 A 대전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80283).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 씨 부부는 2016년 8월 일본 교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 박사와 A 대전시의회 의원은 이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했다.

김 씨 부부는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김 씨 부부에게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전시의회 의원에게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A 대전시의회 의원에게 대해선 2심에서 김 씨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박사에 대한 원심은 유지되고,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라며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선불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ㄷ

9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
"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모텔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일 보험회사인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44895)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20년 4월 인천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모텔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4월 해당 모텔에서 투숙하던 B 씨는 투숙하던 중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화재로 인해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해 8월 A 사는 모텔 숙박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뒤 B 씨 등에게 "모텔의 객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객실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B 씨의 책임보험사인 C 사에게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1, 2심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 배려 등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 법리와는 다른 별개의 논리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A 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따르되, 숙박시설 객실은 숙박업자의 지배·관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과는 증명책임을 달리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해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0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 추징 미선고는 부당”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700).

대부업체 대표 이 씨는 2021년 10월~2022년 6월 공범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팀을 만들고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피해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3100여만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씨는 피해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 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1억8700여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인 이 씨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1억8700여만 원 등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초과이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가액의 추징을 명한 1심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는데,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

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4호, 2023. 12.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의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며, 국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을 인하하고,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 완화(제13조의2제1호 및 제3호)
-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종전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내야 해당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또는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업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 등 조정(제29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제31조제1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낮추고,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퍼센트 증가한 금액만큼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농·어업인과 임업인 간의 형평을 맞추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도모함.

다. 경작용 행정재산의 사용료 기준 합리화(제29조제3항)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종전에는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작과 직접 관련된 지표인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사용료 산출 시 경작과 관련 없는 수입은 제외되도록 개선함.

라.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확대(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최대 3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매각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매입을 지원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 대통령령 제3391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5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5조제3항제3호의2"를 "제55조제3항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을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으로 한다.

1의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제31조제1호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제4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각종"을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 사업 등 각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호다목·바목·사목·자목·차목"을 "제18호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제4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제51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50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한다.

- 1.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제56조 중 "제55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제55조제2항제2호"로, "제3항제3호·제5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제55조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면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 대한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임금의 산정-③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 통상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육아휴직급여(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Q: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참조〉

▣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2.부터 4.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의 1.부터 6.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Calculation of wages-③

□ Ordinary wage

- "Ordinary wage" refers to money and valuables such as hourly wages that are set to be paid regularly and uniformly in return for work, and serves as a basis for calculating dismissal notice allowances, etc.
- What is "ordinary wage"?
 - "Ordinary wage" means hourly wage, daily wage, weekly wage, monthly wage, or contract amount to be paid to an employee for a specifically agreed work or entire work on a regular and flat basis. (Article 6(1),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Wages and allowances, etc. to which ordinary wages are applied
 - Ordinary wages ar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following allowances or salaries.
 - Advance notice of dismissal (Article 26, 「Labor Standards Act」)
 - Overtime/nighttime/holiday work allowance (Article 56, 「Labor Standards Act」)
 - Annual paid leave allowance (Article 60(5), 「Labor Standards Act」)
 - Parental leave benefits (Article 70, 「Labor Standards Act」)
 - Maternity leave benefits (Article 76, 「Employment Insurance Act」)

Ordinary wages that are the basis for calculating maternity leave benefits

Q: If working hours are shortened at the request of a pregnant worker, should the ordinary wage that is the basis of maternity leave pay be based on the ordinary wage before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Or should it be based on the normal wage at the time the working hours were shortened, that is,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maternity leave?

A: Since Article 76(1), 「Employment Insurance Act」 stipulates that the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Are paid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ordinary wage of the 「Labor Standards Act」(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tart date of leave) for the period of maternity leave', the ordinary wag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maternity leave pay,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day the leave started.

- Standards for determining ordinary wages

- Whether a wage belongs to the ordinary wage shall be judged according to its objective nature based on whether the wage is paid regularly, uniformly, or fixedly as money and valuables paid to workers in return for prescribed work, and it is not determined by formal standards such as the name of the wage or the length of the payment cycl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89399 on 2013.12.18.).
- How to calculate ordinary wage
 - Where the ordinary wage is calculated on an hourly basis, the following formula shall apply to such calculation.(Article 6(2),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1. The wage determined by the hourly wage is the amount
 2. The wage determined as a daily wage is the amount divided by the number of prescribed working hours per day.
 3. The wage determined as the weekly wage is the amount divided by the number of standard hours for calculating the ordinary wage in one week (the sum of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in one week and the hours treated as paid in addition to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4. The wage determined as a monthly wage is the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amount by the number of standard hours for calculating the ordinary wage in a month (the number of hour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standard number of hours for calculating the ordinary wage in a week by the average number of weeks in a year divided by 12)
 5. Wages determined for a fixed period other than daily, weekly, and monthly ar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o 4 above
 6. The wage determined by the contract amount is the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wage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ontract system during the wage calculation period by the total number of working hours during the wage calculation period (if there is a wage deadline, the wage closing period)
 7. If the wage received by a worker consists of two or more wages determined in paragraphs 1 to 6 above, the sum of the amount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to 6
 - Where the ordinary wage is calculated on a daily basis, such ordinary wage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an hourly wage by the contractual working hours per day. (Article 6(3),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工资的计算-③

■ “标准工资”是指，作为劳动的对价，约定定期、一律支付的计时工资等钱物，是计算预告解雇津贴等的标准。

■ “标准工资”是指？

- “标准工资”是指，为所定劳动或一切劳动，约定定期、一律向劳动者支付的时薪金额、日薪金额、月薪金额或承包金额（《劳动基准法施行令》第6条第1项）。

■ 适用标准工资的薪酬及津贴等

- 标准工资是计算下列津贴或薪酬等的标准：

- 预告解雇津贴（《劳动基准法》第26条）；
- 加班、夜间、假日劳动津贴（《劳动基准法》第56条）；
- 带薪年假津贴（《劳动基准法》第60条第5项）；
- 育儿休职工资（《劳动基准法》第70条）；
- 产前后休假工资（《劳动基准法》第76条）。

作为产前后工资计算标准的标准工资

Q：根据怀孕劳动者的要求缩短劳动时间的，作为产前后工资标准的标准工资应当以缩短劳动时间之前的标准工资为准？还是以缩短劳动时间的时间点，即申请产前后休假当时的标准工资为准？

A：《雇佣保险法》第76条第1项规定，“产前后休假工资等，就产前后休假期间，支付《劳动基准法》中的标准工资（以休假开始之日为准进行计算）相应的金额”，因此，作为产前后休假工资计算标准的标准工资，以休假开始之日为准进行计算即可。

《来源：雇佣劳动部，参照《劳动基准法质疑回示集》劳动改善政策科-6703，2013.11.12.》

■ 标准工资判断标准

- 特定工资是否属于标准工资，应当以该工资是否是以所定劳动为对价支付的钱物，是否以定期、一律、固定支付为基础，根据客观的性质作出判断，而不是根据工资的名称或支付周期的长短等形式上的标准确定的（大法院全体出庭法官听审2013.12.18.宣告2012da89399）。

■ 标准工资的计算方法

- 标准工资以时薪金额计算的，以根据下列方法计算的金额为准（《劳动基准法施行令》第6条第2项）：

1. 以时薪金额确定的工资，则该金额；
2. 以日薪金额确定的工资，则该金额除以1日所定劳动时间小时数的金额；

3. 以周薪金额确定的工资，则该金额除以1周的标准工资计算标准时间小时数（1周的所定劳动时间和所定劳动时间以外带薪处理时间的合计时间）的金额；
 4. 以月薪金额确定的工资，则该金额除以1个月标准工资计算标准时间小时数（1周的标准工资计算标准时间小时数乘以1年的平均周数后再除以12的时间）的金额；
 5. 除日、周、月之外，以一定期限确定的工资，则根据上述2.至4.所计算的金额；
 6. 以承包金额确定的工资，取在该工资计算期间，根据承包制所计算的工资总额除以该工资计算期间（有工资发放截止日期的，则工资发放截至期间）的总劳动时间小时数的金额；
 7. 劳动者领取的工资在上述1.至6.中至少由2个相应工资组成的，则1.至6.中各计算金额的合计金额。
- 标准工资以日薪金额计算的，根据上述计算方法所计算的计时标准工资乘以1日的所定劳动时间小时数来计算（《劳动基准法施行令》第6条第3项）。

Tiền lương-③

-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là tiền và các vật có giá trị chẳng hạn như tiền lương theo giờ v.v. được quy định phải được trả đều đặn và nhất quán để đổi lấy sức lao động, đồng thời còn được coi là tiêu chuẩn để tính tiền bồi thườ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trước thời hạn.
-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là gì?
 -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là tiền lương theo giờ, lương theo ngày, lương theo tuần, lương theo tháng hoặc lương thầu khoán được trả một cách đều đặn và nhất quán theo tổng công việc hoặc theo công việc được quy định (Khoản 1 Điều 6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Lương và trợ cấp v.v. được áp dụng mức lương bình thường
 -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được dùng làm tiêu chuẩn tính các khoản lương và trợ cấp v.v. như sau:
 - Tiền bồi thườ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lao động trước thời hạn (Điều 26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rợ cấp làm thêm giờ, làm đêm, làm vào ngày nghỉ (Điều 56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rợ cấp nghỉ phép năm có lương (Khoản 5 Điều 60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Lương nghỉ nuôi con (Điều 70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Lương nghỉ trước và sau khi sinh con (Điều 76 Luật Bảo hiểm việc làm)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làm tiêu chuẩn tính lương nghỉ trước và sau khi sinh con

Q: Trường hợp giảm giờ làm việc theo yêu cầu của người lao động đang mang thai,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dùng để tính lương nghỉ trước và sau khi sinh có phải là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trước khi giảm giờ làm việc hay không? Nếu không phải, phải áp dụng mức lương bình thường tại thời điểm giảm giờ làm, tức là tại thời điểm xin nghỉ phép trước và sau khi sinh phải không?

A: Theo Khoản 1 Điều 76 Luật Bảo hiểm việc làm, tiền lương nghỉ trước và sau khi sinh con được quy định là số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được tính từ ngày bắt đầu nghỉ phép) theo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đối với khoảng thời gian nghỉ trước và sau khi sinh con, nên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để tính lương nghỉ trước và sau khi sinh con chỉ cần tính từ ngày bắt đầu nghỉ phép là được.

(Nguồn: Tham khảo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Phòng Chính sách Cải thiện lao động-6703, 12.11.2013)

- Tiêu chuẩn đánh giá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 Việc một khoản tiền lương nào đó có thuộc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hay không phải được đánh giá theo bản chất khách quan dựa trên việc khoản tiền lương đó được trả đều đặn, nhất quán và cố định dưới dạng tiền hoặc vật có giá trị trả cho người lao động để đổi lấy sức lao động theo công việc đã quy định hay không và không căn cứ vào các tiêu chuẩn mang tính hình thức như tên gọi của khoản tiền lương đó hay khoảng cách dài ngắn của chu kỳ thanh toán v.v. (Phán quyết số 2012 Da 89399 của Hội đồng toàn thể Thẩm phán Tòa án Tối cao ngày 18.12.2013).
- Cách tính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 Nếu lương bình thường được tính theo giờ, lương bình thường sẽ là khoản tiền được tính theo các cách sau (Khoản 2 Điều 6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1. Số tiền lương được tính là lương theo giờ
 2. Số tiề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chia tiền lương được tính theo ngày cho số giờ làm việc được quy định cho 1 ngày
 3. Số tiề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chia tiền lương được tính theo tuần cho số giờ tiêu chuẩn để tính lương bình thường cho 1 tuần (tổng số giờ làm việc theo quy định cho 1 tuần và số giờ được coi là được trả thêm ngoài số giờ làm việc đã được quy định)
 4. Số tiề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chia tiền lương được tính theo tháng cho số giờ tiêu chuẩn để tính lương bình thường mỗi tháng (số giờ tiêu chuẩn để tính lương bình thường trong một tuần nhân với số tuần trung bình trong 1 năm chia cho 12)
 5. Số tiền được tính bằng tiền lương được tính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ngoài tính theo ngày, tuần, tháng và tuân theo từ mục 2 đến mục 4 ở trên
 6. Số tiề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chia tổng số tiền lương được tính theo chế độ thầu khoán trong kỳ tính lương cho tổng số giờ làm việc trong kỳ tính lương tương ứng (thời hạn trả lương, nếu có)
 7. Tổng số tiền được tính lần lượt từ mục 1 đến 6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lao động nhận được từ hai khoảng lương trở lên được quy định từ mục 1 đến 6 bên trên
 - Khi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được tính là tiền lương theo ngày,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sẽ được tính bằng cách nhân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theo giờ, được tính theo cách tính bên trên, với số giờ làm việc được quy định cho 1 ngày (Khoản 3 Điều 6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VIII. 법제처 법나들이



시행법령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023. 11. 17. 시행)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步道)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합니다.
-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합니다.
-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합니다.